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최종익 〉

1. 안 건 명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72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5월 27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5월 29일

3.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7.1.부터 기존 장애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이 2단계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자치 법규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 반영
 - 1) “장애등급” → “장애정도”
 - 2) “1~3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3) “4~6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자치법규 개정 현황 : 조례 10건(7개 부서)〉

연번	자치법규 명	관련조문	개정 내용	비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5조 (지원범위)	장애등급 → 장애정도	조례안 제1조
2	서울특별시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3조의3 (할인)	1급, 2급 및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조례안 제2조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장애등급 제2급 이상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조례안 제3조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제3조(정의) 제8조(이용료)	중증장애인(1급, 2급),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례안 제4조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이용편의 제공)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례안 제5조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13조 (설치 및 운영)	1급, 2급 및 3급 등록 장애인 →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례안 제6조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연회비 징수)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조례안 제7조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용료 등)	1급, 2급 및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조례안 제8조
9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인)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조례안 제9조
10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수강료 감면기준)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례안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19. 5. 9. ~ 2019. 5. 16.(의견제출 없음)
-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동의
-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9.5.21)

6. 검토의견

○ 조례안 개정취지

장애등급제는 1988년부터 도입되어 31년 만에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7.1.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함으로써 장애정도 기준이 기존 1급에서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에서 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6단계에서 2단계로 장애등급제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에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

○ 검토의견

- 2019.5.31.기준 마포구 주민등록 인구는 총 374,719명 중 등록장애인은 13,113명으로 인구대비 3.50%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서울시 평균 4.03%(주민등록 인구 9,762,062명, 등록장애인 393,214명) 보다 0.23% 낮으며, 아울러 마포구 중증장애인은 2,975명으로 등록장애인 전체 대비 22.68%로 확인되었음.

〈표 1〉 등록장애인 및 주민등록 인구 현황

2019.5.31.기준				(단위 : 명)
구분	마포구 (A)	서울시 (B)	구별 평균 (B/25개구)	마포구 비율 (A/B)
등록장애인 수	13,113	393,214	15,728	3.33%
주민등록 인구	374,719	9,762,062	390,482	3.83%

(출처: 마포구, 행정안전부)

〈표 2〉 마포구 중증장애인 현황

2019.5.31.기준				(단위 : 명)
계	1급 등록장애인	2급 등록장애인	3급 중증장애인	
2,975	1,149	1,768	58	

(출처: 마포구)

- 또한 장애인등급제가 도입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외연확대에 기여했으나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기준으로 장애계의 지속적 폐지 요구가 있어왔으며 이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를 현행 서비스별 신청에서 통합신청으로 개편하고 절대적기준인 장애등급을 개인별 욕구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⁹⁾를 도입 활용하는 것임.
- 따라서 장애인서비스 등록체계와 지원체계 개편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됨.

9)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란 :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 및 환경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포괄적으로 평가

참고자료

마포구 · 서울특별시 등록장애인 현황

○ 마포구 등록장애인 현황 : 13,113명

(2019. 5월말 기준)

등급	장애인수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발달 (지적, 자폐)	기타
	13,113	5,849	1,782	1,467	1,431	1,061	1,523
1급	1,149	175	25	242	366	301	40
2급	1,768	280	261	41	258	354	574
3급	2,091	655	193	67	281	406	489
4급	1,986	1,161	426	78	166		155
5급	2,823	1,712	573	100	173		265
6급	3,296	1,866	304	939	187		

* 기타 : 신장(604명), 정신(493명), 언어(107명), 장루요루(101명), 간(85명), 호흡기(48명), 뇌전증(36명), 심장(36명), 안면(13명)

○ 서울시 등록장애인 현황 : 393,214명

(2019. 5월말 기준)

등급	장애인수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발달 (지적, 자폐)	기타
	393,214	178,732	52,614	41,830	41,254	32,407	46,377
1급	32,232	4,902	939	6,370	9,279	9,105	1,637
2급	52,364	8,892	6,762	1,003	7,934	11,119	16,654
3급	65,156	20,499	5,990	1,797	8,563	12,183	16,124
4급	58,312	33,710	12,594	2,180	5,245		4,583
5급	85,763	51,954	18,008	3,315	5,107		7,379
6급	99,387	58,775	8,321	27,165	5,126		

* 기타 : 신장(16,706명), 정신(16,368명), 언어(3,248명), 장루요루(2,812명), 간(2,449명), 호흡기(2,108명), 뇌전증(1,231명), 심장(1,071명), 안면(384명)

○ 마포구 동별 등록장애인 현황

동명	장애인 수	동명	장애인수	비고
합계	13,113			장애인 거주 순위 1. 성산2동 2. 공덕동 3. 상암동
공덕동	1,501	서교동	675	
아현동	676	합정동	599	
도화동	766	망원1동	865	
용강동	604	망원2동	757	
대흥동	429	연남동	546	
염리동	446	성산1동	704	
신수동	667	성산2동	2,017	
서강동	695	상암동	1,166	

○ 마포구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

연령	장애인 수	여성 장애인 수	남성 장애인 수	비고
합계	13,113			
0-9	146	84	62	
10-19	340	228	112	
20-29	571	359	212	(음영부분) 출산추정 주요 연령대 비율 (2,603명, 19.85%)
30-39	707	477	230	
40-49	1,325	896	429	
50-59	2,178	1,476	702	
60-69	2,681	1,567	1,114	
70-79	3,149	1,546	1,603	
80-89	1,786	734	1,052	
90-99	226	66	160	
100-109	4	2	2	

○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현황 : 60명

등급	장애인수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신장	언어
	60	47	1	8	1	1	2
1급	8	7		1			
2급	9	7	1			1	
3급	12	8		3	1		
4급	10	8					2
5급	6	6					
6급	15	11		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3. 제6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중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2017. 12. 19.>]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9.]

[중전 제32조의5는 제32조의8로 이동 <2017. 12. 19.>]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17. 12. 19.]